09_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특허상식

#1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비교했을 때 「특허법」은 발명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법률입니다. 「특허법」은 주로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허법」의 목적을 살펴보며 특허권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2
※ 「특허법」의 목적

> ※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발명자의 창작과 기술적인 기여를 보호하고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확인하고, 발명자의 기술적인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수요자의 신뢰보다는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술적인 발전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명자의 창작과 기술적인 기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표입니다.

#3
※ 특허 대상자
특허는 실제 발명을 한 사람 혹은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받고자 하면,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보게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 인해 이후에 정당

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을 인정하고, 게다가 그 특허출원일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이란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여기서 ‘고도한 것’의 의미는 여기서「실용신안법」의 '고안'과「특허법」의 '발명'을 구별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은 '고안'보다 어렵고 복잡한 기술적인 개념을 가리키며, 이러한 '발명'은「특허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고도한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발명'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
※ 발명과 발견
발명(發明)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을 도입하여 창조적으로 새로운 제품, 기술,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편, 발견(發見)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던 것이지만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여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며, 발견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특허법」에서 발명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고안"이 있습니다.「실용신안법」은

이러한 고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과 관련된 고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 실용신안 및 고안의 정의
실용신안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법」은 보호하는 발명에 대해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는 발명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거나 기술적 가치가 낮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용신안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8
※ 고안과 발명의 차이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의 정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특허법」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물건이나 방법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만,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하여 보호합니다. 이는 실용신안이 더 특정한 범위의 기술적 고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9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등록 요건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의료행위’이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발명’은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발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신규성: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진보성: 기존에 있는 발명을 이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 즉, 진보성이 없는 발명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10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권은 침해의 금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간주되어 침해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발명의 독점적인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12
※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
특허발명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항은 특허 출원서에서 특허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특허출원 시에 청구항은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들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특허발명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표는 등록된 표장을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하고, 디자인은 도면을 통해 권리범위가 판단됩니다. 특허발명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통해 권리범위가 판단되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3

※ 특허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특허 청구항은 특허권자가 출원 당시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문서로, 특허권의 범위와 보호 범위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항을 확대해석하여 일부분의 구성 요소를 별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판단된다면, 사용자들은 해당 기술을 사용할 때 관련된 모든 특허를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물건을 사용하는 데 번거로움과 난이도를 느낄 수 있으며,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요소들을 명확하게 청구항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각 요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14
※ 구성 요소 완비 원칙
때문에 특허침해는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특허청구항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따르지 않고 일부 구성 요소만 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문언침해"로 간주됩니다. 즉, 특허청구항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15
※ 실용신안의 침해 판단
법리는 실용신안 고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실용신안법」제28조에서「특허법」제97조를 준용해서 보호범위 역시 ‘고안’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외에 침해 판단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